

『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0월 19일

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지영목

나. 제안이유

- 「소상공인 기본법」 제3조 및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코자 함.

- 아울러,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연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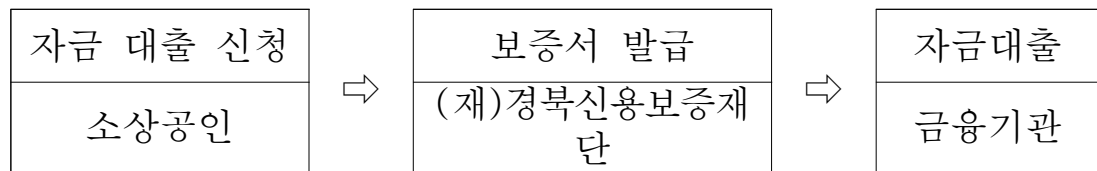
- 1) 출연기관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
- 2) 대 표 자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세환
- 3) 소 재 지 : 구미시 이계북로 7
- 4) 출연예정액 : 금2,000백만원
- 5) 출연금 사용처 : 보증대출금 미상환액 및 약정이자 대위변제

○ 주요사업 : 소상공인 특례보증

- 1) 사업기간 : 2023년 ~ 보증 한도까지
- 2) 지원대상
 - 신용평점 839점(신용등급 4등급) 이하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·소매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자
 - 청년창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는 신용등급 관계없이 지원
- 3) 지원한도
 - 소상공인 : 1인당 30백만원 이내
 - 청년창업자 : 1인당 50백만원 이내
- 4) 상환방법 : 5년 이내
 -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,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택일
- 5) 심사기준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에 의거 항목별 저축여부 심사 후 특례보증

6) 지원방법

- 시 출연금 20억원의 10배수인 200억원을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



7) 지원현황(2022.09.30 기준)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 구분	계	2014 ~2017	2018	2019	2020	2021	2022
출 연 금	4,500	1,400	400	700	1,000	미 출 연	1,000
보증금액	45,000	14,000	4,000	7,000	3,105	6,895	10,000
보증업체수 (개 소)	2,271	921	253	376	163	327	231

○ 출연 필요성

- 1)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2)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,
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예산조치 : 2023년도 본예산
- 기 타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(붙임)

[붙임]

[재]경북신용보증재단 현황

(1) 기관명(주소) :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(구미시 이계북로 7)

(2) 기관소개

-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함

(3) 설립근거

- 법률 : 지역신용보증재단법
- 조례 :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

(4) 주요기능

-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상담
- 창업정보제공 : 관내 업소분포, 유망업종, 창업트렌드
- 창업적성 검사 및 사업성 평가
- 인허가 절차 안내, 신청서 작성 등
-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상담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「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」 은,

- (재)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출연안으로,
- '21년 327개업체에 69억원, '22년 5월말까지 231개 업체에 1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,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시키고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